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9 월 일 (제 334 회)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최병윤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4년 9월 5일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병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년 9 월 5 일
발 의 자 : 최병윤, 박봉순, 박한범, 박종규, 임병윤, 장선배, 이광진

1. 제정이유

○ 우리 사회는 급속한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가족 유형이 핵가족화 됨과 동시에 효경 중심의 미풍양속은 후퇴하고 있음
※충북 65세 이상 노인인구 : 225,683명(총인구대비 14.3% / '14년 6월 기준)

○ 상위법령인「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07.8.3.)·시행되고 있으나, 선언적 법령으로 인식되어 관심도가 낮은 실정이므로 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대에 부합한 효행문화를 장려 촉진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차별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나.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지원 및 교육 담당인력 양성지원(안 제5조)
다.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안 제6조)
라. 효의 날(10. 2) 지정(안 제8조)
마.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9조)
바.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및 예우・지원(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14-19호

라. **협　　의** :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하였음.

마. **비용추계서** : 별첨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경로효친 사상의 실천을 권장하여 새 시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에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새 시대의 효행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지원 및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수립

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 할 수 있다.

제5조(효행교육 및 담당인력 양성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교육감과 협조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단체 등

② 도지사는 효행교육을 담당할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부모 등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효의 날 지정)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 및 도민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제8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 ① 도지사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또는 법 제10조에 따라 표창을 받은 효행 우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주요행사 초청
2. 도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한 예우 및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0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효행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10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효행을 장려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 효행교육의 장려, 효행장려 사업 지원, 효행우수자의 예우 및 지원 등

2. 비용 발생 요인

○ 효행교육 담당인력 양성 지원 소요 사업비

○ 기관·단체 등 효행교육 실시 사업비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효행교육 및 담당인력 양성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효행교육 담당인력 양성 지원(50명) 및 효행교육 사업비 지원(500개소 × 2시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초로 산출

나. 추계 결과

○ 효행교육 담당인력 양성 지원 : 19,000천원 (단년)

○ 기관·단체 등 효행교육 : 50,000천원 (매년)

다. 재원조달방안

○ 효행교육 담당인력 양성 지원 : 도비(50%), 자부담(50%)

○ 기관·단체 등 효행교육 : 도비(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장 신 재 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세 출		**69,000**	**50,000**	**50,000**	**50,000**	**50,000**	**269,000**
효행교육 담당인력 양성		19,000					19,000
기관· 단체등 효행교육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재원 조달		**69,000**	**50,000**	**50,000**	**50,000**	**50,000**	**269,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59,500	50,000	50,000	50,000	50,000	257,6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민간 자부담)		9,500					9,500